

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19 - 850 호

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정정 및 위반건축물 시정 재촉구 공시송달 공고

「건축법」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「건축법」 제79조에 의거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‘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정정 및 위반건축물 시정 재촉구 통지(홍제동 245-8호)’ 공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이사불명,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19. 8. 13.

서대문구청



- 제 목 :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정정 및 위반건축물 시정 재촉구 통지 (홍제동 245-8호) 공시송달 공고
- 공 고 기 간 : 2019. 8. 13. ~ 2019. 8. 28.
- 공 고 장 소 : 서대문구청(게시판)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, 인터넷홈페이지
- 의견제출기한 : 2019. 08. 28.

대지위치	건축주(소유자)		처분원인(위반내용)	처분하고자하는 내용(공고내용)	비고 (반송사유)
	성명	주소			
서대문구 홍제동 245-8호	신*일	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7 10*동 4**5호	지상2층 근린생활시설(사무소))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	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정정 및 위반건축물 시정 재촉구 통지(홍제동 245-8호)	폐문부재

- 관 련 법 규 : 「건축법」 제79조, 제80조
- 유 의 사 항 :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.
-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: 서대문구청 건축과 (☎02-330-1956). 끝.